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제한〉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5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지원 강화 및 구상권 제한	3
2. 부 칙	16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5. 22.
3. 회 부 일 : 2026. 05.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

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제2항·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 ----- ----- ----- ----- ----- ----- ----- ----- ----- ----- ----- -----

(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u> 해당 교원에게 법률 <u>상담</u>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 ----- -----<u>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u>----- -----<u>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u>-----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원 보호를 세 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① 관할청¹⁾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²⁾하여야 함(법 제21조제1항).

③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하여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항 각 호).

그러나 법률지원단의 지원 내용이 상담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소송 수행 단계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법 제21조제1항),

1)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2) 첨부 1. 교육활동보호센터내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은 사후 보전 방식이어서 소송 초기의 변호사 선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법 제22조제2항제3호). 최근 5년간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은 3,119건에서 11,027건으로 증가한 반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비 지원은 202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258건, 465건에 그치고 있어 상담과 소송 지원 간 간극이 확인됨³⁾.

이에 개정안은 ① 관할청과 학교의 장의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을 추가하고(안 제20조제1항제4호), ② 법률지원단의 지원 범위를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확대하며(안 제21조제1항), ③ 법률사무소·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안 제21조제2항), ④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소송 수행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과 신설되는 개정안 제20조제1항제4호와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3) 첨부 2.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황

보임.

법 제20조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제1항),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제2항), 학교장의 관할청 보고의무(제3항) 및 이후 관할 수사기관 고발(제4항)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학교의 장과 관할청이 하여야 하는 ‘초기 대응 및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⁵⁾ 및 제22조⁶⁾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법률적 분쟁으로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진행된 경우 교육감이 하여야 하는 ‘법률상담 제공 및 손해배상금 지원, 구상권 행사 지원, 민·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 분쟁 이전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20조에 신설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개정안 제21조제1항은 법률지원단을 통한 지원의 범위를 현행 ‘법률 상담 제공’ 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①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소송 진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시점에서 교육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③ 정당한 교육활동의 개념이 모호하여 교육감의 자의적 해석 및 그에 따른 집행 상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점, ④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정당성 여부를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입법례]

구분	입법례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본조신설 2017. 12.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u>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본조신설 2021. 10. 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u>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8.]

□ 셋째, 개정안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은 현행 법령상으로도 가능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은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법 제21조제2항)7), 지방변호사회 등과의 협약 체결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교육청 간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법률지원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구상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나 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 비용의 구상·환수8)에 한정되는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8)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자가 그 부담의무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최근 법률용어 순화에 따라 '상환청구권'으로 표현됨. 반면 '환수'는 법령·계약·약관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공제금 등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데 따른 구상권과는 법적 성격이 구별됨.

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현행법 제22조제2항⁹⁾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제1호)과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제3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원보호공제 약관¹⁰⁾에서는 일정한 경우 선지급한 소송비용을 교원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된 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상권 제한이 공제사업자의 소송비용 환수에도 적용되는지 등 구상권 제한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손해배상금 관련 구상권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10)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원보호(안심)공제 계약」(2026.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제4장 소송비용 지원

제2조(공제금의 지급 등) ④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먼저 지급(이하 “선지급”이라고 함)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공제금의 환수) 공제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 유죄 가능성이 높아 합의 후 고소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정된 경우. 단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7.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전체 책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환수합니다.

[교원지원법 상 구상권 비교]

조항	구상권을 행사하는 주체 → 상대방	성격
제20조제5항 11)	관할청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피해교원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을 관할청이 먼저 부담 후 가해자 측에 구상
제22조제2항 제1호	공제회 → 사고에 실제 책임 있는 제3자(교원 본인 제외)	보험대위 법리. 교원을 대신해 지급한 배상금을 실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
개정안 제21조제3항	교육감 → 교원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후, 그 분쟁이 교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것이면 교원에게 구상

한편, 개정안 제21조제3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교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제2조¹²⁾의 취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경과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에 따른 손해는 국가 등에 책임을 귀속시키되,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국가 등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¹³⁾

마지막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책임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법리¹⁴⁾가 적용되어 학교법인 등의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구상권 제한의 주체·대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 구상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1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사 개정안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위원회 회부일
10513 (김정재의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신설	2025.5.15.
11405 (이준석의원)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신설 - 소송 지원 전,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 필요 -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근거 신설	2025.7.11.
18567 (정성국의원)	- 교육활동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구상권 행사 제한	2026.4.24.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규정과는 달리 개정안은 법률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법적 분쟁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지원에 앞서서 그 정당성을 확정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 및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도교육청>

○ 인천교육청: 신중검토

- － 개정안 제21조제2항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가능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 따라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신설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법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1조제3항의 별도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대구교육청: 이견없음

-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함

○ 강원교육청: 일부수정

- 구상권 행사 제한 기준을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로 수정
- “교원이 학교 내에서 수행한 직무상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행위는 법률상 정당한 행위로 추정한다”라는 조문 추가

○ 대전교육청: 일부수정

- 소송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수정
-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정당한 교육활동’ 기준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20조 제7항 신설
-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교육부령 등)으로 정한다.”

○ 충남교육청 : 일부수정

- 다음과 같은 조문을 추가

제**조(교육활동 관련 민원의 접수 요건 강화 등)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과 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객관적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조(정보공개 청구 제한 등) ① 관할청과 그 학교의 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보복성·다량·반복 청구 등)하거나, 청구 목적 및 정보공개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 및 필요성 여부는 학교 내 별도의 심의 기구를 거쳐 판단한다.

③ 관할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해 업무 마비 등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게 법률 및 정서적 치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공포 후 법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교육활동보호센터 내 법률지원단 운영 현황 (2026. 2. 28. 기준)

구분	상주								비상주			총계 (A+B)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변호사	상담사	교사	기타	상주 합계 (A)	상담사	변호사	비상주 합계(B)	
서울	12	35	25	12	3	0	0	87	271	277	548	635
부산	1	1	4	1	2	0	1	10	45	60	105	115
대구	1	5	5	6	2	0	1	20	10	47	57	77
인천	1	2	0	2	3	0	1	9	44	33	77	86
광주	2	4	6	2	2	0	0	16	0	20	20	36
대전	1	1	3	0	3	1	1	10	28	45	73	83
울산	1	2	1	2	2	0	0	8	32	12	44	52
세종	1	4	1	0	2	0	0	8	15	11	26	34
경기	26	37	29	19	13	0	0	124	640	372	1,012	1,136
강원	1	2	2	1	1	0	0	7	31	195	226	233
충북	1	2	2	1	1	1	0	8	0	25	25	33
충남	1	2	1	5	2	0	0	11	60	8	68	79
전북	1	2	2	2	2	0	0	9	53	20	73	82
전남	1	1	1	5	1	0	0	9	43	15	58	67
경북	2	2	1	1	1	0	0	7	17	30	47	54
경남	1	9	5	1	4	0	5	25	216	27	243	268
제주	2	1	0	1	0	2	0	6	0	31	31	37
합계	56	112	88	61	44	4	9	374	1,505	1,228	2,733	3,107

자료 : 교육부, 2026. 6.

참고 2

최근 5년간 교육활동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황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법률상담	3,119건	3,187건	4,102건	7,143건	11,027건
소송비 지원*				258건	465건

* 전국단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통한 소송비 지원은 24학년도부터 시작
자료 : 교육부, 2026. 6.